천안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입주자모집공고

HIGHVILL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입주자격 및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천안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천안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에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내 대표번호(☎1588-0057)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7.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3.27.(금)	26.04.01.(수)	26.04.02.(목)	26.04.03.(금)	26.04.09.(목)	26.04.13.(월)~ 26.04.15.(수)	26.04.20.(월) ~ 26.04.22.(수)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13154호(2026.03.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78-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35층 8개동, 총 895세대 [특별공급 490세대(기관추천 89세대, 다자녀가구 89세대, 신혼부부 206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8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6000078	01	084.4024A	84A	84.4024	27.2637	111.6661	56.0659	167.7320	45.1099	171	17	17	39	5	15	93	78	6
	02	084.8374B	84B	84.8374	26.4177	111.2551	56.3549	167.6100	45.3424	161	16	16	37	5	14	88	73	5
	03	084.5725C	84C	84.5725	27.1219	111.6944	56.1790	167.8734	45.2008	213	21	21	49	6	19	116	97	8
	04	084.4153D	84D	84.4153	27.3659	111.7812	56.0745	167.8557	45.1168	137	14	14	32	4	12	76	61	5
	05	084.4742E	84E	84.4742	27.6992	112.1734	56.1136	168.2870	45.1483	43	4	4	10	1	4	23	20	2
	06	084.7900F	84F	84.7900	29.2231	114.0131	56.3235	170.3366	45.3170	28	3	3	6	1	3	16	12	1
	07	084.9167G	84G	84.9167	26.8204	111.7371	56.4076	168.1447	45.3848	142	14	14	33	4	13	78	64	5
	합 계									895	89	89	206	26	80	490	405	32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x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별(라인별)	층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5%) 1차(계약시)	2차(계약 후15일 이내)	중도금(60%) 1차(10%) 2026.08.18.	2차(10%) 2027.01.18.	3차(10%) 2027.06.18.	4차(10%) 2027.11.18.	5차(10%) 2028.04.18.	6차(10%) 2028.09.18.	잔금(35%) 입주지정일
84A	171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7동 4호 108동 4호	1층	6	85,061,000	313,939,000	399,000,000	5,000,000	14,95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39,650,000
			2층	6	85,061,000	322,939,000	408,000,000	5,000,000	15,4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42,800,000
			3층	6	85,061,000	330,939,000	416,000,000	5,000,000	15,8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45,600,000
			4층	6	85,061,000	335,939,000	421,000,000	5,000,000	16,05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47,350,000
			5~9층	30	85,061,000	344,939,000	430,000,000	5,000,000	16,5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50,500,000
			10~29층	105	85,061,000	357,939,000	443,000,000	5,000,000	17,15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55,050,000
			30층 이상	12	85,061,000	361,939,000	447,000,000	5,000,000	17,35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56,450,000
84B	161	102동 3호 106동 3, 4호 107동 3호 108동 3호	1층	4	85,499,000	292,501,000	378,000,000	5,000,000	13,9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32,300,000
			2층	5	85,499,000	300,501,000	386,000,000	5,000,000	14,3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35,100,000
			3층	5	85,499,000	309,501,000	395,000,000	5,000,000	14,75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38,250,000
			4층	5	85,499,000	313,501,000	399,000,000	5,000,000	14,95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39,650,000
			5~9층	25	85,499,000	321,501,000	407,000,000	5,000,000	15,35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42,450,000
			10~29층	93	85,499,000	334,501,000	420,000,000	5,000,000	16,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47,000,000
			30층 이상	24	85,499,000	338,501,000	424,000,000	5,000,000	16,2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48,400,000
84C	213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호 106동 2호 107동 2호 108동 2호	1층	2	85,232,000	286,768,000	372,000,000	5,000,000	13,6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30,200,000
			2층	8	85,232,000	294,768,000	380,000,000	5,000,000	14,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33,000,000
			3층	8	85,232,000	302,768,000	388,000,000	5,000,000	14,4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35,800,000
			4층	8	85,232,000	306,768,000	392,000,000	5,000,000	14,6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37,200,000
			5~9층	40	85,232,000	314,768,000	400,000,000	5,000,000	15,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40,000,000
			10~29층	147	85,232,000	327,768,000	413,000,000	5,000,000	15,65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44,550,000
84D	137	101동 1호 102동 1호 106동 1호 107동 1호 108동 1호	1층	5	85,074,000	290,926,000	376,000,000	5,000,000	13,8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31,600,000
			2층	5	85,074,000	298,926,000	384,000,000	5,000,000	14,2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34,400,000
			3층	5	85,074,000	307,926,000	393,000,000	5,000,000	14,65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37,550,000
			4층	5	85,074,000	311,926,000	397,000,000	5,000,000	14,85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38,950,000
			5~9층	25	85,074,000	319,926,000	405,000,000	5,000,000	15,25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41,750,000
			10~29층	92	85,074,000	331,926,000	417,000,000	5,000,000	15,85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45,950,000
84E	43	103동 1호 104동 1호	3층	2	85,133,000	334,867,000	420,000,000	5,000,000	16,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47,000,000
			4층	2	85,133,000	339,867,000	425,000,000	5,000,000	16,25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48,750,000
			5~9층	10	85,133,000	348,867,000	434,000,000	5,000,000	16,7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51,900,000
			10~24층	29	85,133,000	361,867,000	447,000,000	5,000,000	17,35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56,450,000
84F	28	105동 1호	2층	1	85,452,000	330,548,000	416,000,000	5,000,000	15,8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45,600,000
			3층	1	85,452,000	339,548,000	425,000,000	5,000,000	16,25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48,750,000
			4층	1	85,452,000	344,548,000	430,000,000	5,000,000	16,5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50,500,000
			5~9층	5	85,452,000	353,548,000	439,000,000	5,000,000	16,95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53,650,000
			10~29층	20	85,452,000	366,548,000	452,000,000	5,000,000	17,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58,200,000
84G	142	101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 4호	1층	5	85,579,000	294,421,000	380,000,000	5,000,000	14,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33,000,000
			2층	5	85,579,000	302,421,000	388,000,000	5,000,000	14,4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35,800,000
			3층	5	85,579,000	311,421,000	397,000,000	5,000,000	14,85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38,950,000
			4층	5	85,579,000	315,421,000	401,000,000	5,000,000	15,05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40,350,000
			5~9층	25	85,579,000	323,421,000	409,000,000	5,000,000	15,45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43,150,000
			10~29층	97	85,579,000	336,421,000	422,000,000	5,000,000	16,1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47,700,000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1차 ·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32-0001-6888-09	㈜한국토지신탁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1차 ·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예정일
84A	17,300,000	1,730,000	15,570,000
84B	16,600,000	1,660,000	14,940,000
84C	16,200,000	1,620,000	14,580,000
84D	16,800,000	1,680,000	15,120,000
84E	18,600,000	1,860,000	16,740,000
84F	24,000,000	2,400,000	21,600,000
84G	16,200,000	1,620,000	14,58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경남은행	232-0001-6890-01	㈜한국토지신탁	입금 시 동 · 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위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예시 : 101동 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203홍길동'으로 기재),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잔금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예시 : 101동 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203홍길동'으로 기재).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아래 표)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0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 신청자는 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아래 표)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 사업주체 및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6-101-0002100 호	243,698,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호	주식회사 범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주식회사 유진씨엔이	주식회사 에이스엔지니어링
금액	3,078,222,400	831,527,000	820,546,870	286,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주)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110111-1258220
시공사	(주)동일토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두정동, 엠프라자 4층)	110111-0629026
위탁사	(주)동일코퍼레이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두정동, 엠프라자 4층)	110111-6137495

■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동일코퍼레이션이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동일코퍼레이션이고,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동일코퍼레이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급대금은 본문 기재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 후 하자 불문, 오시공 · 미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자인 (주)동일코퍼레이션 및 시공회사인 (주)동일토건이 부담한다.
5.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천안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신축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분양계약 목적물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회사인 (주)동일토건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동일코퍼레이션에게 있다.
7. (주)한국토지신탁은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8. 상기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사항보다 우선한다.

■ 홈페이지 주소 : 천안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천안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79) I ☎1588-0057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등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 일반분양 **총 895세대** **1588.0057**

시행 한국토지신탁 시공 동일토건 위탁 (주)동일코퍼레이션